

재해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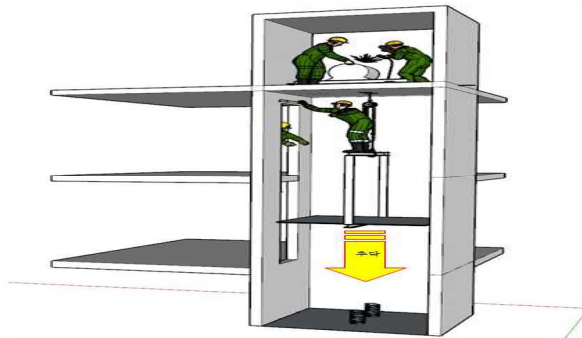
2021. 01. 04(월) 13:45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소재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의 승강로 내부에서 임시카를 타고 도어행거 철거 작업을 하던 중 임시카를 매달고 있던 줄걸이 로프(슬링벨트)가 파단되면서 약 5미터 아래 PIT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.

* 승강로 내부에서 작업하기 위해 카 프레임을 이용하여 만든 작업대

【 유사 재해사례 】

◆ 2020년 12월 26일 10:07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승강기 교체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내부 철거작 중 승강기를 매달고 있던 체인이 끊어지면서 승강기와 함께 작업자가 추락(H≒22.9m)하여 사망

재해상황도



< 재해발생 상황도 >



< 사고발생 구간 현황 >

재해발생원인

- 작업방법 불량
 - 재해 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1호기의 권상기의 위치를 조정한 후, 기계대에 고정하기 위해 슬링벨트를 기계대의 빔에 걸어 임시카를 매달아 놓은 상태로,
 - 기계실 내부에서는 가연물인 슬링벨트 주변(11미터 이내)에서 용접작업을 하였고, 승강로 내부에서는 도어행거 철거작업을 하는 등 무리하게 상하 동시작업을 하였음.
-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
 - 사업주는 승강로 내에서 엘리베이터 철거 및 설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,
 -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함.

재발방지대책

- 작업방법 개선
 - 권상기와 엘리베이터 카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임시카를 기계대에 매단 상태로 용접 작업을 할 경우,
 - 용접 불티에 의해 줄걸이 로프가 파단되지 않도록 와이어 또는 체인 등으로 줄걸이를 체결하고 상하 동시작업을 금지하는 등 작업방법 개선.
- 추락방지조치 철저
 - 사업주는 승강로 내에서 엘리베이터 철거 및 설치 등의 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,
 -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상태로 작업하여야 함.